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민사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민사집행법」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.

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,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“분리송금”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1)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제6항 신설)
- 2)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,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(안 제8조 제7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(이하 “관리계좌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,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부분은 생계비계좌에 지급하고, 초과하는 부분(이하 “초과분”이라 한다)은 관리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(이하 “관리계좌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,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부분은 생계비계좌에 지급하고, 초과하는 부분(이하 “초과분”이라 한다)은 관리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</u>
<u><신 설></u>	

을 반환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법무심의관	
연 락 처	(02) 2110 - 3734